

규정 해설

소화설비 할인 규정(2)

규정에 의해 우리 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소화설비 할인검사에 합격한 소화설비는 전호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보험가입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소방법규와 대비, 요약하여 연재한다.

소화설비 할인규정과 소방법과의 비교

구 分	소 방 법 규	소 화 설 비 할 인 규 정								
동력소방펌프 (1992. 6. 1) 1. 동력소방펌프의 종류	* 소형펌프차 * 자동차에 견인되는 동력소방 펌프 * 기타의 동력소방펌프	* 소방자동차(소방펌프자동차) - 소방펌프가 차대에 고정된 것 * 가반식 소방펌프차 - 소방펌프가 인력 또는 기타에 의해 운반되는 차대에 고정								
2. 수원	*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0.2\text{m}^3/\text{min} \times 20\text{분} = 4\text{m}^3$ *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0.4\text{m}^3/\text{min} \times 20\text{분} = 8\text{m}^3$	* 바다·하천·저수지 등 실용상 풍부한 수량 * 72m^3 저수조 * $40\text{m}^3 \sim 72\text{m}^3$ 의 급수시설로 유효수량 72m^3 에 미달되는 양은 방수 개시후 20분 이내 보증. * 급수시설이 없는 $40\text{m}^3 \sim 70\text{m}^3$ 저수조 2개 - 소방펌프차 2대로서 반경 100m 이내 포용. * 저수조가 없는 경우 별도의 가압장치로서 토출량의 150% 이상으로 40분 이상 공급수량 - 흡입수두 4.5m 이내 - 수심 0.5m 이상 - 소방펌프가 2m 이내 접근 및 충분한 공지확보 - 토사유입 방지 - 흡수관 투입구 60cm 이상 - 유효수량 표시판 설치								
3. 포용	<table border="1"><thead><tr><th>방수량</th><th>주원-소방대상물 거리</th></tr></thead><tbody><tr><td>0.4m^3</td><td>25m 이하</td></tr><tr><td>$0.4 \sim 0.5\text{m}^3/\text{m}$</td><td>40m 이하</td></tr><tr><td>$0.5\text{m}^3/\text{min}$</td><td>100m 이하</td></tr></tbody></table>	방수량	주원-소방대상물 거리	0.4m^3	25m 이하	$0.4 \sim 0.5\text{m}^3/\text{m}$	40m 이하	$0.5\text{m}^3/\text{min}$	100m 이하	* 취수장으로부터 소방대상물까지 반경 100m 이내 포용.
방수량	주원-소방대상물 거리									
0.4m^3	25m 이하									
$0.4 \sim 0.5\text{m}^3/\text{m}$	40m 이하									
$0.5\text{m}^3/\text{min}$	100m 이하									
4. 급격방수량 (펌프 토출량) 5. 장비	옥내소화전 포용대상 - $0.2\text{m}^3/\text{min}$ 이상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 $0.4\text{m}^3/\text{min}$ 이상 규정없음	* 방수능력이 $1,800\ell/\text{min}$ 이상으로서 노즐 선단의 방수압력 $3.0\text{kg}/\text{cm}^2$ · 방수량 $450\ell/\text{min}$ 이상 성능으로 2대 이상 설치. 급수관 호스(노즐 1개당 5본 이상) 노즐 각 예비품								
6. 격납장소	* 소형 펌프차 또는 차량견인 동력소방펌프 - 보행거리 100m 이내 * 기타 - 수원작근	* 소방자동차 - 수원으로부터 주행거리 1,500m 이내 * 가반식 소방펌프차 - 수원으로부터 300m 이내 * 차고 - 영상 5°C 이상 보온								

구 분	소 방 법 규	소 화 설 비 할 인 규 정
7. 소방대	규정없음 * 소방법 시행령 제23조 참조	10인 이상 소방대 편성 주·야 상주
8. 유지관리	우내소화전 참조	수원-3개월에 1회 이상 확인점검 - 청정하게 보존 - 갈수기에도 수원 확보 - 수원사용에 지장없도록 정비 - 수원에 이르는 통로확보 소방펌프차-매일 1회 이상 운전 - 연료는 상시 80% 이상 확보 방수훈련-3개월마다 1회 이상 - 5분 이내 소화작업 가능 - 훈련결과(방수압, 방수량 등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유지
9. 할인대상		* 세칙으로 규정 - 유효 방수표에 따른다.(전호의 방수표를 참조할 것) * 할인적용 제외물건 - 일부 위험물 취급소, 제조소 - 일부 위험물 저장소 - 7,000V 초과하는 발전소 등 - 락크식 창고-높이 10m 이상, 연면적 700㎡ 이상으로 승강기 반송 - 주수소화가 불가능 장소

세칙

이 세칙은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적용상 필요한 세목을 정한 것이다.

1. 유효방수

높이 15m 이상의 건물 및 옥외설비 및 장치의 유효방수에 필요한 노출압력을 다음과 같다.

* 유효 방수표는 전호에 게재된 표를 참조할 것.

* 다음호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게재할 예정임.

* 전호에 대한 일부내용 정정

25페이지 하단 3제줄 : 일반건물, 공장건물, 불연성→일반건물, 공장건물, 가연물

26페이지 : 14. 할인대상중 4번은 삭제할 것.

27페이지 : 8. 시동장치 : ■ 수압개폐기 기동방식 : 대용량 전동기·내연기관의 기동방식은 각 소화전마다 시동장치 생략가능